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5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전용기 · 박선원 · 박해철
손명수 · 정준호 · 복기왕
이연희 · 박상혁 · 김원이
강준현 · 이건태 · 양문석
김남희 · 송옥주 · 박 정
윤종균 · 허 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
하거나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
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 아.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③ ~ ⑤ (생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u> <u>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u> <u>게 지정헌혈하거나 「혈액</u> <u>관리법」 제14조에 따른</u> <u>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u>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